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공  보

제1022호 2016년 10월 24일(월)

공 고

- 속초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여고 2
- 속초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여고 8

「속초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 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0월 24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명을 정비하고, 법률에 근거 없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진재해대책법”을 “「지진·화산재해대책법」”로 법령 변경함.(안 제1조)

나.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시설물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전문평가기관의 장”으로 수정함.(안 제3조)

다.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요청받은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은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삭제함.(안 제3조)

라.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법령 변경함.(안 제5조)

마. 보험 가입의 주체, 비용 부담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속초시 본부장은 평가단원 등이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부상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로 수정함.(안 제10조)

바. 별지1호 서식 중 “지진재해대책법”을“「지진·화산재해대책법」”로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3. 자치법규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 11. 14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안전방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인적사항 기재 :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 기관·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의 인적사항 기재

다.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주 소 :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24826), 안전방재과

○ 연락처 : 전화(033-639-2402), 팩스(033-639-2588)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속초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을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시설물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전문평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제5항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속초시 본부장은 평가단원 등이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부상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말소) 신청서

회원번호		신 청 일	
------	--	-------	--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소 속		직 급	
주소 : (-)		전화 : ()	
		FAX : ()	
E-mail :			
전문분야 :			
☐ 건축물 ☐ 교량·터널 ☐ 댐·저수지			
☐ 철도 ☐ 원자력시설 ☐ 항만			
☐ 가스·전력·통신 ☐ 기타()			
본인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의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 말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속초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귀하			

210mm×297mm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 ----- -----.
제3조(적용범위) ① (생략) ② 관할구역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속초시 본부장이 실시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요청받은 시설물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시설물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전문평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 ① ~ ④ (생략)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속초시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2. · 3. (생략) ⑥ · ⑦ (생략) 제10조(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 ① (생략) ② 위험도 평가 활동으로 평가단원이 사망 또는 부상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 ----- ----- -----. 1. 「건설기술 진흥법」 ----- ----- - 2. · 3. (현행과 같음) ⑥ · ⑦ (현행과 같음) 제10조(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속초시 본부장은 평가단원 등이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부상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속초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 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0월 24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는 바, 법적 근거 없이 협의회의 운영 경비를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의회에 운영 경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이에 대한 근거가 없으므로 삭제함
(안 제13조)

3. 자치법규안 : 불입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 11. 14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안전방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인적사항 기재 :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 기관·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의 인적사항 기재

다.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주 소 :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24826), 안전방재과
- 연락처 : 전화(033-639-2402), 팩스(033-639-2588)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속초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속초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협의회의 업무 수행 또는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호에 따라 비용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경비 지원) <u>협의회 회장은</u> <u>회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u> <u>호에 따른 경비 등을 지급할 수</u> <u>있다.</u> 1. · 2. (생 략) 3. <u>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u> <u>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u>	제13조(경비 지원) <u>협회의 업무</u> <u>수행 또는 회의에 출석한 회원</u> <u>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u> <u>각 호에 따라 비용 등을 지급할</u> <u>수 있다.</u> 1. · 2. (현행과 같음) <u><삭 제></u>